

#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윤남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4월 9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4월 11일

3. 제안이유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다. 무궁화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무궁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지원항목, 포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5. 검토내용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나라꽃인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무궁화 동산 거리조성, 무궁화 교육·홍보 등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무궁화, 무궁화 진흥 사업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위한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산림청에서 수립하고 있는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및 제6조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범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 및 제8조는 무궁화 진흥 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19. 4. 3.~'19. 4. 8.)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나라꽃인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무궁화 동산 거리조성, 무궁화 교육·홍보 등의 무궁화 진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 '18년도 말을 기준으로 충청북도 내에는 32개소의 무궁화 동산과 71개소에 무궁화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총 400점의 분화를 육성하고 식재지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나라 꽃 무궁화 전국축제’에서 총 6회의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우리 도의 무궁화 분화육성 사업은 우수한 수준으로 무궁화 진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